

☑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 안내

단속방법 -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CCTV 활용 (현재 37개 지점)

구 분	평상시	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대 상	2005.12. 이전 등록 된 총 중량 2.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	2005.12.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
시행시기	기시행 중	2018. 6. 1.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시행
벌 칩	1회 경고,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	과태료 10만원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저감장치 부착차량 · 매연10% 이내 차량 · 조기폐차 신청 차량 	저감장치 부착차량
유예대상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도권 외 등록차량 · 총 중량 2.5톤 미만 차량 · 장애인 차량 ※ 유예기간 : 2019. 2. 28. 까지